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9.)

검 토 보 고 서

검 토 안 건	부서명
참총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기획예산과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1월 19일 (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화)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5.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 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6.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제2조~제3조)
- 나. 구성 및 임원(제4조~제6조)
- 다. 회의 및 의결(제7조~제8조)
- 라. 사무국 설치 및 업무(제13조~제14조)
- 마. 재원 및 부담금(제16조~제17조)

7.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2019년 본예산에 연회비 500만원 편성
- 나. 구성현황 : 77개 기초자치단체 가입 (서울 15개구 가입)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부터 3조에는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무국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이며,
-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인구 유동성의 증가,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불일치 등으로 행정이 광역화됨에 따라 관할 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협력이나 공동처리가 불가피하며,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지역 간 갈등이 종종 야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하여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끌어 내어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운영규약안 제3조 “기능”에 있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제1항과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협의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능에 부합하는지, 추상적인 기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 의거 가입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25개구 가입)와의 기능 및 사업내용 연계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광역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회의 명확한 공동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4조 관련)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15
부 산	북구, 연제구, 사상구	3
인 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용진군	4
광 주	동구, 남구, 북구	2
대 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
울 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
경 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21
강 원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4
충 북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3
충 남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6
경 북	구미시	1
경 남	창원시, 거제시	2
전 북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4
전 남	담양군, 영광군	2

2.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기능 및 사업내용 비교

구분	기능 및 사업 내용	근거법령
<p>참좋은지방 정부협의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4.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p>지방자치법 제152</p>
<p>전국시장· 군수·구청 장협의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2. 시·군·구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사업 3. 시·군·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4.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p>지방자치법 제165조</p>
<p>서울특별시 구청장협 의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자치구의 사무에 있어서의 연락조정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3.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입안 및 추진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사항 	<p>지방자치법 제165조</p>

2-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약칭"NAM")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구"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사 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2. 시·군·구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3. 시·군·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4. 기타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협의회는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③ 특별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행정 시·군·구의 장은 총회 또는 공동회장단회의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공동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4조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시·도별 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시·군·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준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협 의 회 의 조 직

제7조 (조직) 본 협의회의 조직은 총회, 공동회장단회의, 시·도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시에 분과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총회) 협의회 전 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둔다.

-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총회 안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인준
2.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중요 정책입안이나 건의사항 채택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공동회장단회의) ① 공동회장단회의는 협의회의 공동회장단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시선거로 인해 최초로 소집되는 경우 시·도별 회장 15명으로 구성된다.

- ② 공동회장단의 구성은 시·도별 회장 15명,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선임한 군수 3명으로 한다.
- ③ 공동회장단의 임원은 대표회장 1명, 부회장 3명(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대변인 1명으로 하되, 시·도별 회장 15명 중에서 선임한다.
- ④ 회의는 격월(연 6회)로 시·도별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대표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⑤ 공동회장단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대표회장이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 ⑦ 공동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시·도의 회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회장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직전 대표회장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공동회장단 고문으로 위촉한다.
- ⑨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대표회장 및 임원 선임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제·개정 및 회원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건의사항
 6.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하여 의견 집약 및 조사연구사업
 7.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회장단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⑩ 협의회 사무처장은 총회 및 공동회장단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 (공동회장단의 임원선임 및 임기) ① 공동회장단의 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회장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이 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2차 투표까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더 이상 투표하지 않고 다음 순으로 결정한다.
 - 가. 기초자치단체장 선수가 많은 자
 - 나. 연령이 많은 자

2. 부회장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로 각 1명씩 호선한다.
3. 사무총장, 대변인은 대표회장이 지명한다.
4. 감사는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호선한다.
5.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대표회장을 선임한다. 이 경우 유고라 함은 사망, 사퇴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표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공동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 일까지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대표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 기만료후 새로운 공동 회장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동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무)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공동회장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분과협의회의 회장을 겸임하며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회장과 협의하여 사무처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동회장단회의및 총회에 보고한다.

⑤ 대변인은 대표회장과 협의하여 사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표명하고 대변한다.

⑥ 고문은 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 (시·도별 협의회) ① 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등을 둔다.

② 시·도별 협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회칙을 준용하되,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별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